

[별표1]

연구관 직위별 임용기준

구분	직 위 명	요 건
		경 력
제1호가	기술표준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2호 가목 직위의 근무경력 6년이상인 자 ○ 광공업직군의 3급이상 직위 근무경력 6년이상인 자 ○ 교육·연구기관등에서의 연구경력 23년 이상인 자
제2호가	기술표준원 국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관 직위의 종류 제2호 가목 직위의 경력이 있는 자 ○ 연구관 직위의 종류 제2호 나목 직위의 근무경력 5년이상인 자 ○ 광공업직군의 4급이상 직위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○ 교육·연구기관등에서의 연구경력 17년 이상인 자
제2호나	기술표준원 과장 (다만, 지원총괄과장 제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관 직위의 종류 제2호 나목 직위의 경력이 있는 자 ○ 연구관 직위의 종류 제3호 나목 직위의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○ 광공업직군의 5급 이상 직위의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○ 교육·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경력 12년 이상인 자

※ 제1호가, 제2호가, 제2호나의 구분은 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정한 구분임